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0가단524383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서민금융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5. 24.

판 결 선 고 2021. 6. 21.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494,459원과 그중 11,304,282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8. 8. 28.자 증여계약을 12,494,45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2,494,4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B은 원고에게 12,494,4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350만 원, 보증기한을 2023. 3. 20.,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고, 위 피고가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미지급보증료와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2019. 1. 11.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9. 9. 16. 합계 11,745,495원(= 원금 11,475,000원 + 이자 270,4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441,213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채당금은 124,228원이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20. 8. 18.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1,065,949원이다.

다. 피고 A은 2018. 8. 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8. 8.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8. 12. 4.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12. 6. 위 금융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12,494,459원(=11,745,495원 - 441,213원 + 124,228원 + 1,065,949원)과 그중 대위변제  
원금 11,304,282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9.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부부인 피고들의 공동 소유로 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피고 A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선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한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2019. 8. 18. 현재 총 12,494,459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변론종결일인 2021. 4. 12. 이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2,494,45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반환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2,494,4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별지

## 목 록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 301㎡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 지상  
목조스리트지붕 단층주택  
29.75㎡

- 이 상 -